

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에코디자인 소재 연구개발(R&D) 지원사업 공고

『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』에서는 친환경 에코디자인 소재를 연구·개발(R&D)하는 연구자(단체) 및 창업 기업, 예비창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연구 자금 및 컨설팅 등을 지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0년 6월 25일

광명시장

1. 공모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협약일 ~ 2020.12.31.
- 지원분야 : 에코디자인¹⁾ 소재 연구개발(R&D)
- 지원대상 : 창업자, 예비창업자, 연구자(단체 가능)
- 지원규모 : 총 40,000천원(시비 100%)
 - 지원자(단체) 당 최대 10,000천원까지 신청 가능(자부담액 제외)
 - 심사 결과에 따라 총 지원자(단체) 수 및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
- 추진방식 : 공개모집, 심사를 통한 지원자(단체) 선정 후 지방보조금 지원
- 사업목적
 - 창의적인 에코디자인 소재를 발굴하고 추후 성과물을 활용한 창업 공모전, 소재 매뉴얼 제작 등을 연계 추진하여 에코디자인 인식 확산 및 산업 활성화
 -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제품 및 작품의 소재로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거, 가공, 제품 디자인 연구 과제 발굴 및 지원

1) 에코디자인(eco-design)이란 제품의 전 과정(원료채취, 수송, 생산, 사용, 폐기)에서 환경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여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함

*관련 출처 : 환경경영정보포털(www.gmi.go.kr)

2. 지원 사항

○ 보조금 지원 사항

사업명(분야)	예산액(천원)	내 용	비 고
에코디자인 소재 연구개발 (R&D)	40,000 (사업당 최대 10,000천원 이내 지원)	<예시> ① 플라스틱 등 일회용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소재, 생분해 소재 연구 ②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수거 및 가공 하여 업사이클 제품 개발 방안 연구 ③ 원단 로스율을 최소화 하는 소재 재단 방법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	<예시> 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

※ 지원 신청 불가한 사업 : 학위논문집, 연례 학술 행사 및 에세이, 교습서, 번역본 등 연구 작업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 발간 사업

○ 연계 지원 사항 : 가상오피스 및 전문가 상시 컨설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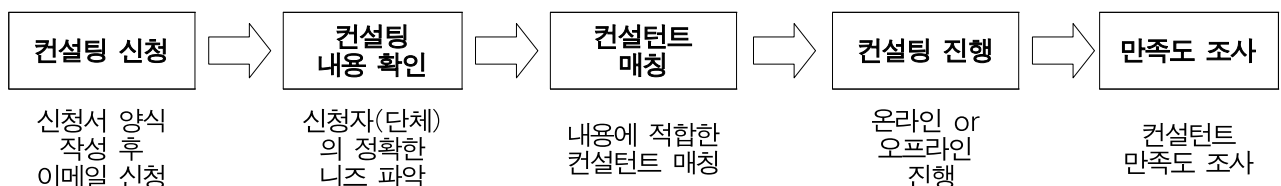
① 가상오피스 입주 지원 가능 (예비창업자에 한함)

※ 가상오피스란? 비상주 사무공간으로, 사업자등록 주소지 및 우편함을 무상 지원하는 서비스

② 전문가 무료 상시 컨설팅 지원

※ 지원선정자(단체) 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함 (지원 기간 : 2020.7.~11.)

비즈니스 분야		경영 지원 분야	
에코	에코 생태계 관련 분야 환경 관련 법령, 규제, 정책 등	법률	법인 창업, 창업 법령 및 규제 등
비즈니스 모델	소재 아이템의 사업화	세무·회계	원천세, 부가세,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회계장부 관리 등
마케팅	판매 전략, 홍보 마케팅	지식재산권	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취득
브랜딩	기업의 이미지 메이킹, 브랜드 전략	인사·노무	고용, 월차, 노동법 등
유통	판매처 및 채널 전략	투자	투자유치 전략 등
기술, 제조	소재 연구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	해외진출	미국, 중국 등 판로개척과 수출 방법 및 바이어 발굴 방법



3. 신청자격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7년 미만의 창업자(개인/법인), 예비창업자 또는 연구자(단체)
 - 공고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법인설립등기일’,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‘사업개시일(개업일)’ 기준,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정서 내 ‘신고연월일’ 기준으로 인정서가 유효하여야 함
 - 예비창업자(단체)는 **2020.11.30.까지 광명시 관내 사업자등록(창업)이 가능해야 함** ※ 희망 시,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입주 기능(상세 절차 별도 문의)
 - 예비창업자로 이루어진 그룹 또는 정식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동 연구자 그룹의 경우, 대표자 “개인”으로 신청하고, 팀 구성원 명단 제출
- 우대 사항
 - 개인 :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
 - 단체 :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소재를 둔 단체(기업)

※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

-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 단체
- 관계 법령 및 「보조금 운영관리규정」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·단체
-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, 단체, 기업
-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
-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(시효 소멸자는 제외),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(단, 선정 이후 교부 신청 전까지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-지방세 완납 증명서)
- 동일한 소재 연구 사업으로 타 중앙정부, 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지원금을 받은 자로, 타 사업과 지원기간(협약기간)이 중복되는 경우(사업선정 후에도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사업선정 취소 가능) ※ 단. 신청기간이 중복되어 이중 선정될 경우 사업포기서 제출
-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
4. 지원 원칙

- 지원원칙 : 신청자(단체) 당 1개 사업 지원

※ 여러 사업으로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 시 중복 선정하지 아니함

- 지원항목 : 연구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개발비(경비)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, 인쇄비, 원고료, 통번역료, 자문료, 시제품 제작비, 국내여비,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임차료,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, 특허·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등

(사업)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

- 시설·수선·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
- 상근직원 인건비·사무실 임차료·사무용 집기구입·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
- 타 연구기관,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(용역성 경비)
- 불우이웃돕기성금, 진료비, 시상금,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
- 참가자 기념품 제작·구입비, 다과회·식비, 임직원 급량비, 일회성캠페인 및 홍보성 관외행사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
- 기타 본 사업에서 신청한 연구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비용 일체
 - ※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
 - ※ 상세한 보조금 사용범위는 붙임 2 지방보조금 집행기준 매뉴얼 참고

- 자부담 : 총 사업비의 10% 이상 자기부담금 편성 의무

- (예시) 총 사업비 1,000만원 (보조금 900만원, 자부담 100만원)

※ 최종 선정 시,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금을 먼저 예치한 후 교부 신청해야 함

※ **사업비(보조금액)는 심의과정 중 조정될 수 있으며**, 확정된 금액에 비례하여 자부담 비율 유지해야 함

5. 심사 및 결과발표

- 심사방식 : 서류 및 발표 심사

- 심사절차

- (1차) 행정심사(자격요건 및 서류 제출 여부 확인, 합격/불합격 판정)
- (2차) 전문가심사(심의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발표 심사)
- (3차)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⇒ 2020. 7월말 예정

○ 심사기준 및 배점 (4개 항목 100점)

심사항목	배점	심사기준
사업 수행역량	20	사업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성, 관련 업무 경험 여부 등
사업의 적합성	30	사업의 타당성(충실성, 구체성), 사업의 독창성 및 시장성
사업 기대성과	30	사업목표 달성 가능성, 성과물의 활용 및 파급효과
예산의 적절성	20	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

※ 총점 70점 이상 득점자 중 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 선정 후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추천 (합격자 포기 경우를 대비해 예비합격자 선정 가능)

※ 2차 전문가 심사는 1차 합격자(단체)를 대상으로 5분 발표(대면/PT), 5분 질의 방식으로 진행하며,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서류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

○ 우대 사항 : 전문가 심사 시 가산점 3점 부여

- 개인 :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(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시)
- 단체 :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소재를 둔 단체(기업) (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제출 시)

○ 결과 발표 : 광명시청 홈페이지(www.gm.go.kr) 고시공고란에 공고

6. 신청 접수

○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0. 7. 10.(금) 18:00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gmghub@naver.com)

○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유의사항	비고
필수	① 지원신청서	• 지정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, 서명(인)	붙임 1
	② 사업계획서		
	③ 단체활동 소개서	• 기업 및 단체의 경우에만 제출 • 지정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, 서명(인) • 기업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정관, 회칙 제출	붙임 1
	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• 단체는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 •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인정서 추가 제출	-
	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• 국세와 지방세 모두 발급하여 제출	-
	⑥ 개인정보 동의서	• 지정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, 서명(인)	붙임 1

선택	가점 증빙서류	• 해당자에 한해 제출(주민등록표초본 등)	
	소재 및 제품의 견본(샘플) 실물	•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• 제출처 : (우14341)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,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‘에코디자인 R&D’ 담당자 앞	등기우편 제출

- ▶ 신청서류 양식은 ① 광명시청(www.gm.go.kr) 고시공고 또는
 ② 경기문화창조허브(www.gcon.or.kr/ghub) 에서 다운로드
 ▶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(ZIP) 제출

- ※ 제출물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(자격증, 경력증명서, 출원서, 수수료증 등)
 ※ 광명시는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(단체)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7. 사업 일정(안)

※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공고 및 신청 접수 광명시 ~ ‘20.7.10.	▶	서류 심사 1차 : 내부 행정심사 2차 : 전문가 심의위원회 ~ ‘20.7.15.	▶	지방보조금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~ ‘20.7.31.
▼				
사업수행 지원선정자(단체) ‘20.8.15.~12.31.	◀	협약체결 및 교부 광명시 - 지원선정자(단체) ~ ‘20.8.15.	◀	지원선정자 발표 광명시 ~ ‘20.7.31.
▼				
사업수행 수시 점검 광명시 ‘20.8.15.~12.31.	▶	성과 및 정산 보고 지원선정자 ~ ‘21.1.31.	▶	성과 평가 및 정산 검사 광명시 ~ ‘21.2월~7월

8. 사업설명회

-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신청자에 한해 개별 사업 안내
- 보조금 집행 등 지원 상세 내용, 신청서 작성요령 등 안내를 원하는 경우 전화, 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하며, 사전 예약자에 한해 방문 상담 가능 (방문처 :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사무실)

9. 사업 수행 관리 및 보조금 집행

○ 보조금 집행

-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못하며, 사용 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정산보고 시 광명시에 사본 제출해야 함. 원본은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보관 필수
- 보조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중단할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2020 광명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 준수

○ 수행관리

- 사업 수행 중 광명시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최대 2회 이내 사업 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,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은 광명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
- 보조금 교부 후 광명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진행도를 수시 점검(필요시 현지조사 등)할 수 있으며,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 진행이 부진하거나 보조금 사용이 부적정한 경우 '주의' 조치함.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 협약 해지와 보조금 환수 검토

○ 결과물 제출

-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
 -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, 최대 2021.1.31.까지 제출 필수, 지정 서식
- 연구 성과 증빙자료
 - 최종보고서(연구보고서), 소재 또는 시제품(시작품) 실물, 발생품(S/W, 특허, 논문, 저작권 등), 견본·매뉴얼 등 각 사업에 맞는 형태로 연구 성과 증빙자료 제출 필수

10. 유의사항

-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 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
-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허락 없이 모방하였을 경우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,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책임은 수행자(단체)에 있으며,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 -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,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
 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
 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 -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보조금 지원 철회
- 본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특허권, 지적재산권, 보고서, 판권 등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사업 수행자(저작자)에 귀속됨. 단, 광명시는 각종 성과물에 대해 3년간 일체의 공동 사용권을 가지며, 공익적 용도로 재가공(디자인의 보완, 변경 포함)하여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있음. 본 사업에 지원 신청 시 위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본 사업의 지원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광명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
- 지방보조금 신청, 집행, 교부, 정산 보고 시에는 관련 법령, 조례 및 [붙임2] 2020 광명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을 준수할 것

11. 문의처

-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(☎ 02-2680-6968 / gmghub@naver.com)

붙임 1. 지원신청서류 양식 1부.

2. 광명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 1부. 끝.